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141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최원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박상희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2020. 1. 6. 진주시 D 대 540.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99.48㎡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C에게 2009. 2.경부터 2011. 9.경까지 총 956,80,000원을 대여하고, 그중 278,525,000원을 변제받아 578,355,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그런데 C이 2020. 1. 6. 유일한 재산인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합10353호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1. 6. 22.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C에게 10,6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쌍방이 항소하였다.

2)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2264]은 2022. 6.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C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95,5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C으로부터 2010. 11. 22.부터 2021. 9. 9.까지 278,52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효인, 판사 김정은, 판사 엄현재